



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조세재정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의 주요 기능은 납세자들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권리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는 주 및 지방 조세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주는 세법(Tax Law) 411에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을 수립했습니다. 조세부는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을 지원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 및 감사에 관한 조세부의 의무를 설명하는 비전문적 서술
- 납세자들이 조세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청하고,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
- 조세부가 조세 채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징수 과정이라고 함)

아래 참조된 모든 간행물을 포함해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조세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본 간행물 마지막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본 간행물은 세무 행정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뉴욕주 세무 감사

조세부는 납세자들이 정확한 세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뉴욕주 세법에 따르면, 감사 기간 동안 □□□□ □□ □□□□□ □□□ □□□□ □□ 필요한 모든 기록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 대상 신고서의 유형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 영수증, 비용, 신용 및 기타 사업 기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문 감사 기준

일반 회계 원칙과 감사 기법에 정통한 조세부 감사관이 전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관은 납세자, 납세자의 가족 또는 납세자의 종업원(사업체 감사의 경우)과 사적인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사관은 감사 대상인 사업체에 어떠한 사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는 공정하고, 정중하며 전문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 과정 동안 언제라도 이 기준이나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되면, 즉시 감사관의 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비위 혐의를 신고하시려면 조세부의 내무국(Office

of Internal Affairs)에 518-451-1566번으로 전화하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십시오.

**NYS TAX DEPARTMENT OFFICE
OF INTERNAL AFFAIRS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0811**

우편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간행물(Publication) 55,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감사 기간 동안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감사관과 협력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 감사 기간 동안 납세자의 사업이나 사생활의 차질 최소화
- 독단적 조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공소시효

뉴욕주 세법은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부의 권리에 3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세금 신고 후 3년). 그러나 부정합한 조세 회피 거래가 있을 경우, 또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서 소득을 25%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추가 세액 징수에 6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납세자와 조세부는 공소시효의 만료 전에 서면 동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납세자가 국세청(IRS)의 연방 세금 신고서 변경(연방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조세 회피 의도로 거짓 혹은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 징수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상속세 및 법인세 목적으로, 최종적인 변경, 수정, 재협상 또는 기각 결정 후 일반적으로 90일 내에 납세자는 연방 변경을 뉴욕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이후에 제출된 수정 신고서의 경우,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부의 권리에 대한 공소시효는, 수정 신고서의 변경 또는 수정에 기인하는 경우, 그러한 수정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더 긴 기간이 적용되거나 수정 신고서가 연방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납세자는 조세부의 특정 정보 요청 이유와 해당 정보의 사용 방법 및 해당 정보의 미제출 결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조세부가 세금 신고서나 감사 중에 얻은 정보를 비인가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된 비밀유지 및 상호주의 기준 내에서 조세부가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IRS 및 기타 정부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감사 시 대의권

납세자는 감사 기간 동안에 스스로를 대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납세 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서면 승인서(양식 POA-1,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납세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조세부에 전화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납세자는 감사 기간 동안 언제든지 대의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대의권을 확보할 때까지 회의나 면담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재정부의 전직 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조세재정부를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일부 □□□□□□, □□□□□□ 2□□□□□□□□□□□□ (Division of Tax Appeals)를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전직 직원은 재직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한 세무 전문 기관의 감사 조정이 다른 기관의 세금 재산출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세 및 보상 사용세의 경우, 조세부가 요청한 기록을 납세자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기록이 조세부의 세금 결정에 불충분한 경우, 조세부는 추가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간 및 소요 기간

감사는 일반적으로 3년 기간을 다루며,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감사 대상 신고서의 복잡성 및 납세자 기록의 시의적절한 가용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 감사 결과

조세부가 변경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신고서, 환급 요청 또는 문서에 변경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 감사관은 감사 업무 문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감사 결과 및 감사 기간 동안 사용한 감사 방식과 절차를 쉽고 비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기간 동안 발견된 회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기록 관리 관행에 대한 권장 변경 사항
-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세법의 적절한 해석 설명
- 추가 세액에 대한 고지
- 환급액에 대한 고지

조세부는 감사 결과를 검토할 합리적인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납세자가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감사관은 이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문서를 수정 및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감사가 환급으로 귀결되면, 감사관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동의하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한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제안된 감사 변경 진술서(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 또는 유사한 문서에 서명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전액과 함께 감사관 앞으로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이 있으나 전액을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할부 납부 약정을 맺고 정해진 기간 동안 세액을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할부 납부 약정* 참조). 이 경우, 미납 잔액에 대해 이자(및 벌금도 가능)가 계속 누적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안된 감사 변경 진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해 감사관에게

음성 녹음

□ 세자는 조세부에 사전 서면 고지를 제공함으로써 대면 면담을 음성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가 비용 하에 자가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세부는 납세자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를 통해 대면 면담을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 녹음을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비용을 조세부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부는 녹취록이나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장 감사

납세자에게 요구한 기록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감사는 통상적으로 15일 전에 일정을 잡습니다. 감사관이 최초 약속을 정하기 위해 현장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연락□니다. 납세자는 약속 일정의 확정 및 납세자가 제공해야 할 장부와 기록을 설명한 서신을 받게 됩니다. 사업체 감사의 경우, 납세자가 사업 활동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약속은 납세자의 사업체에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기록 수집에 15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는 통상적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요청□□ 수 있습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지연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추가 시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시 회의

납세자와의 최초 회의(*개시 회의*) 시에, 감사관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감사의 접근방법 및 절차 설명
- 감사 과정 설명
- 납세자가 감사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의할 권리 및 이의 제기 절차 설명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이 회의를 이용해 문의하십시오.

감사 방식

조세부는 감사를 실시할 때 몇 가지 감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 감사
- 시범 기간 방식을 차용한 감사
- 통계적 표본 추출 방식을 차용한 감사

감사관의 방식 선택은 세금 유형, 기록의 정확성 및 가용성, 사업체의 규모와 복잡성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감사의 범위가 확장되어 복수 세금 감사가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가 다른 세금의 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한 조사 결과는 감사 과정 동안 언제든지 다른 세금 전문 기관에 □□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사실과 정황에 따라,

□□□ 6 / 8 Publication 131 (10/19)

조세부가 취한 최종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에 양식 CMS-1, *조정 회의 요청서(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를 제출하거나, 또는 조세 이의 분과에 세금 이의 심리를 요청하는 양식 TA-100,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해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 추징세 또는 결정의 발행
- 환급 청구의 거부
- □□, □□ □□ □□ □□ □□ □□ □□ □□

□□ 부가 조치에 관한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세자는 요청 또는 청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받은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시간 제한은 세법에 정해지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요청이나 청원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 **배달 증명(Certified)** 또는 **등기(Registered)** 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규칙의 목적상, 신고일은 요청이나 청원이 들어 있는 봉투에 미국 우편 서비스(U.S. Postal Service)의 소인이 찍힌 날짜, 또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7502□에 명시된 대로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에서 기록 또는 표시한 날짜를 말합니다. 간행물 55,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에 이 목적으로 승인된 민간 우송 서비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출석해 본인을 대리하거나, 또는 승인 받은 대리인이 해당 납세 심리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만 납세자를 대리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특정 금전 한도 이내인 경우, 납세자는 소액청구과(Small Claims Unit)에서 조세 이의 분과 심리를 열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소액 청구 옵션 참조*).

유산세의 경우, *유산세 이의 제기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이나 조세 이의 분과에서의 정식 선납 심리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신고서상 계산 또는 사무 오류
- 연방 신고서에 대한 IRS의 변경 사항
- 신고서상 납부해야 □ □ 액의 전액 또는 일부 미납

조정 회의

조정 회의는 정식 심리 없이 항의건을 해결하는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조정 회의는 조정 위원에 의한 비공식적인 절차로, 조정 위원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 회의 후 조정 위원이 동의서 형식으로 제안된 해결안을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납세자가 조세 이의 분과에 청원, 양식 TA-100을 제출하지 **않는 한**, 조정 명령(Conciliation Order)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해당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명령과 함께 수령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유통업체, 수입 운송업체, 터미널 운영업체 또는 석유 사업체의 채권이나 기타 유가 증권액의 증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회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조세 이의

분과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 회의를 요청하시려면, 조세부의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통해(계정이 없는 경우 조세부 웹사이트에서 OLS를 검색해 계정을 만드십시오), 또는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에 518-435-8554번으로 양식 CMS-1-MN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NYS TAX DEPARTMENT
CONCILIATION & MEDIATION SERVICES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0918**

우편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간행물 55,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조세 이의 심리

조세 이의 심리를 요청하려면 조세 이의 분과에 양식 TA-100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원은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어떤 조치에 항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심리는 공정 행정법 판사의 주재로 열리는 반박 절차입니다. 심리는 속기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심리 후, 납세자 또는 조세부가 조세 이의 위원회(Tax Appeals Tribunal)에 해당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지 **않는 한**, 행정법 판사가 분쟁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심리 기록 및 추가 구두 또는 서면 주장 검토, **및**
-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용인, 파기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내림, **또는**
- 추가 심리를 위해 행정법 판사에 사안을 환송

양식 TA-100 및 *규범 및 절차 규칙(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은 조세 이의 분과 및 조세 이의 위원회 웹사이트 www.dta.ny.go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266-3000번으로 전화하거나 아래 □□□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IVISION OF TAX APPEALS
AGENCY BUILDING 1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3**

청원 양식 및 규칙에 대한 요청은 시간 제한의 목적□ 심리 청원 제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써 청원 접수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원 심사

조세 이의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법원 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 요청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조세 이의 위원회가 배달 증명 우편 또는 개인 송달로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일부 세금의 경우, 납세자는 법원 심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법원 비용을 더해 납부하거나, 또는 이러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 8 / 8 Publication 131 (10/19)

경우, 약정에 따라 체납 상태가 됩니다. 조세부가 납세자에게 체납 통지서를 제공한 후, 약정에 따라 해당 채무에 대한 징수 조치를 재개하거나, 또는 해당 약정을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일체 지불금, 환급금 또는 기타 금전을 할부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 채무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된 일체 금전은 납세자의 할부 납부 약정의 상환 조건을 경감시키지만, 납세자는 여전히 채무를 전부 납부할 때까지 약정에 따른 월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상계 참조).

조세부는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보 없이 언제든지 할부 납부 약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조세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최소 30일 전 고지로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에 한해 할부 납부 약정을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약정 체결 전에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안정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
- 납세자의 재정 상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 납세자가 기한까지 할부 납부금이나 기타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 납세자가 향후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요청 시 납세자가 본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을 종료하게 되면 조세부는 이후 채무에 대한 징수 조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 약정을 체결한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부는 납세자의 차후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 서기 및 뉴욕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세금 영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세금 영장 참조).

납세자가 세금 채무 전액을 해결하지 않거나, 할부 납부 약정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조세부가 절충안을 철회 또는 거부하는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의 세금 채무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체 혹은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영장

조세부는 납세자를 상대로 세금 영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영장(Tax warrant)* □ 납세자에 대한 민사 판결에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뉴욕주 카운티 서기 사무실 및 뉴욕주 국무부에 보관되는 공문서입니다. 영장 정보는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제기된 세금 영장은 납세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선취특권을 형성해 납세자의 신용 획득 또는 재산의 매수나 매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세부는 납세자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 및 매각하거나, 임금 및 기타 소득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압류

*압류(Levy)*는 납세자 재산의 법적 압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세부는 압류를 집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양식 DTF-978, *판결 확정 채무자에 대한 통지서(Notice to Judgment Debtor or Obligor)*를 발송해 징수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 목록을 제공합니다.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장 흔하며, 이 경우 은행은 납세자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해 조세부에 송금합니다. 압류는 대출금이나 임대료 등 제3자가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체 납세자의 경우, 보유 현금이나 기계 및 장비 같은 사업체 자산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 집행

소득 집행(*Income execution*)은 납세자의 임금에 행해지는 압류의 한 유형입니다. 납세자가 임금을 받을 때마다 총임금의 최대 10%까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의 고용주로 하여금 납세자의 급여에서 총임금의 최대 10%까지 차감해 이를 조세부에 송금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납 세금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소득 집행 효력이 유지됩니다.

압수 및 매각

조세부는 면제 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수해 경매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압수 시, 징수 대행업체가 납세자의 사업체 잠금 장치를 바꿔 납세자의 사업체 장소 및 사업체 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대행업체는 납세자 사업체의 모든 물품을 없애거나, 또는 사업체 자산을 압수해 이를 경매로 매각할 때까지 다른 곳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수할 경우, 조세부는 경매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납세자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벌금 및 이자와 함께 압수 및 경매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전액을 납부하거나, 만족할 만한 납부 합의에 이를 경우, 조세부는 해당 재산의 압수를 해지하고 납세자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납세자는 요청 후 60일 이내, 또는 보다 긴 명시적인 기간 이내에 압수된 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주에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조세부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런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실을 고지할 것입니다.

조세부는 뉴욕 공무 관행법 및 규칙(New York Civil Practice Law and Rules)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자산이 매각되면,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경매 □ 익의 지출 회계 처리를 발송합니다. 경매 수익이 납세자의 채무와 조세부의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부는 해당 초과 금액을 납세자에게 상환합니다.

압류 해지

조세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부

□□□ 10/8 Publication 131 (10/19)

경우, 해당 책임자가 고의적으로 해당 세금을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가 어떤 사람이 책임자인지 고려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인이 능동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운영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 해당인이 어떤 재정적 의무를 지볼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관여하는 경우
- 해당인이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직원 채용 또는 해고 등)
- 해당인에게 수표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 해당인이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 해당인에게 사업 결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경우
- 해당인이 세금 관리자 또는 총 관리자인 경우
- 해당인이 회사 중역인 경우

특정 상황 하에서, 사업체를 대리해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책임자 사정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세 및 사용세의 경우, 합명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일원이면 해당 합명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부가 책임자 사정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책임자 사정서를 발부하고 해당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조세 이의 분과 심리를 청원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90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인에게는 해당 사정서와 책임자로서 본인의 채무를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심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세부는 사정에 항의할 권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원래 사정서에 포함할 것입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에 한해, 해당인의 사업체가 동일한 세금 채무에 대해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조세 이의 심리를 청원하는 경우 해당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확실하지 않고 해당인이 사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정 회의를 요청하거나 조세 이의 심리를 청원하여야 합니다.

책임자 사정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조세부는 해당인의 자산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사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관여하고 있더라도, 조세부는 사업체의 채무 전액을 해당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세금 채무는 파산 시 면책이 불가합니다.

유연 집행인 및 양수인의 유산세 채무

납세자가 유산의 집행인 또는 관리자로서 해당 유산의 수령인에게 자산을 배분하거나, 또는 뉴욕 유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유산에 연관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미납 유산세에 대해 개인적인 채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산세가 전액

납부되거나 조세부가 유산세 선취특권의 해지를 승인할 때까지, 납세자는 계속 그 채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유산 수령인으로서 해당 유산에서 재산을 수령한 경우, 납세자가 수령한 재산의 가치만큼 미납 유산세에 대해 개인적인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및 생존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 계좌

판매세 및 사용세 또는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체 납세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직원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예치하기 위한 신탁 계좌 또는 분리 계좌를 개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 계좌는 세금 신고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준비되도록 해 줍니다.

과거 상습적인 체납 관행이 있는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신탁 계좌 개설을 요구할 것입니다.

권한 증명서의 취소 또는 정지 또는 권한 증명서 발급 거부

조세부는 의도적인 미신고 또는 세금 미납과 같이 세법의 특정 요건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 징수 **권한 증명서(Certificate of Authority)**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권한 증명서**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납세자는 뉴욕주 내에서 **□한 증명서**가 요구되는 일체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취소 또는 정지된 증명서로 사업체를 유지하거나 필수 증명서 없이 새 사업체를 시작하려고 할 경우, 조세부는 민형사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부는 이전의 세법 미준수에 대해 **권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 증명서 취소 또는 정지 절차를 시작하거나 **권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조세부는 항의할 권리를 포함해 이 과정의 매 단계 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고지할 것입니다. 납세자가 채무를 해결하는 등 상황이 이를 보증하는 경우 조세부는 이 과정을 언제든지 □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징수 활동 동안 대의권

납세자는 스스로를 대리하거나 본인을 대리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 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적절한 서면 승인서(위임장)를 납세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 방법은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조세부에 전화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면허 및 담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부나 다른 정부 기관은 납세자의 면허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에 대해 매입한 일체의 채권 또는 기타 담보를 현금화하여 납세자의 세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취소되면 납세자는 새 채권을 확보해야만 채권이 요구되는 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또는 불만 □ □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조세부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조세부에 불만 사항이 있으면,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조).

불만 사안에 따라, 조세부의 담당자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거나 납세자의 불만 사항을 추가 심사에 회부할 것입니다.

□ □ □

www.tax.ny.gov

전화 지원

개인 소득세 정보 센터:	518-457-5181
법인세 정보 센터:	518-485-6027
판매세 정보 센터:	518-485-2889
원천세 정보 센터:	518-485-6654
기타세 정보 센터:	518-457-5735
양식 및 간행물 주문:	518-457-5431
문자전화(TTY) 또는 TDD 장비 사용자	7-1-1을 눌러 □ □ □ □ □ □ □ □ □ □